



교외출강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KTC-D-12
제정일자	2001.03.01
개정일자	2016.12.19
관리부서	교학처

1/3

강원관광대학교 교외출강에 관한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원인사 규정 제4조 제2하에 의거하여 본 대학 전임 교원의 교외 출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 2 조 (정의) 교외출강이라 함은 일정시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본 대학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술이나 직무훈련 등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교육을 담당함을 말한다.

제 3 조 (허가기준) 교외출강은 주당 환산 시수가 본 대학의 담당 책임 시간 수의 0.5배를 초과하지 않을 때, 단 대학원강의와 특별한 경우에는 1배까지 허가 할 수 있다.

제 4 조 (허가) 교외출강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출강의 시작으로부터 5일 이전에 <별지 1호>에 의한 허가원을 소속 학과장 및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3.07.29, 2016.12.19)

제 5 조 (교외출강 금지 자) 책임시간이 감축되는 보직교원과 책임 시간에 미달되는 교원은 교외출강을 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3.07.29.)

제 6 조 (무단 출강자 조치) 허가 없이 무단 교외 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총장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7.29.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교외출강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KTC-D-12	2/3
제정일자	2001.03.01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학처	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
교외출강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KTC-D-12
제정일자	2001.03.01
개정일자	2016.12.19
관리부서	교학처

3/3

< 별지 1호 > (개정 2013.07.29, 2016.12.19)

교 외 출 강 허 가 원

학과장	부장	처장	총장

성 명 : _____
 직 위 : _____
 직 급 : _____
 소속학과명 : _____

본인은 다음과 같이 교외 출강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출 강 기 관 명 :
2. 출강 기과의 소재지 :
3. 출 강 기 간 :
4. 강 위 과 목 :
5. 강위요일 및 교시 : ()요일, (-)교시
6. 주 당 시 간 :
7. 칩 부 :

위본인 (인)

강 원 관 광 대 학 교 총 장